

정신보건법 2007 (Mental Health Act 2007)

74 (3)조 및 3 장 (Section 74 (3) and Schedule 3)

권리에 대한 설명서

Statement of rights

환자의 권리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이후 환자의 권리와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래 질문과 대답들을 통해 나와 있으니 주의하여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시설에 도착한 후 어떻게 됩니까?

정신보건시설에 도착한 후 적어도 12 시간내에 시설내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됩니다.

자발적 환자로 이미 정신보건시설에 있는 사람의 경우, 이제 타의로 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고 들었다면,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후 12 시간 이내에 시설내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환자인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환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 경우는 시설내 의사로부터 정신질환 환자 (mentally ill person), 혹은 정신장애자 (mentally disordered person)로 판정받은 경우입니다. 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의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정신질환 환자’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신장애자’란 특정한 이상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단기간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단을 내린 의사 이외의 최소 1 명의 다른 의사가 정신질환, 혹은 정신장애자라고 동의하지 않는 이상 타의로 환자를 시설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을 내리는 의사 중 최소 1 명은 정신과 전문의여야 합니다.

환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될 수 있습니까?

정신장애자로 판정된 경우, 최고 3 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날짜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수용 기간 동안 적어도 매 24 시간마다 의사 진료를 받게 됩니다. 정신장애로는 한달에 3 번이상 수용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 환자로 판정된 경우, 정신보건 심사국 (Mental Health Review Tribunal)의 심사를 받을 때까지 환자는 정신보건시설에 계속 수용됩니다. 이 정신보건 심사국에서 정신보건 심의를 통해 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정신보건시설에서 어떻게 퇴원할 수 있습니까?

환자 본인, 혹은 친구나 가족들은 언제든지 의료 감독관 (medical superintendent), 혹은 인준된 의사에게 퇴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정신질환 환자나 정신장애자가 아니거나 환자에게 다른 적절한 간병장소가 있다고 의료 감독관이나 인준된 의사가 인정한다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환자가 원치 않더라도, 시설내 직원들은 환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또 위급 상황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막기 위해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문의할 경우, 시설내 직원들은 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제공되는지 반드시 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지나친 양이나 부적절한 약품이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전기충격요법 (ECT)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하지만, 환자의 안전이나 복지를 위해서 그러한 치료법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정신보건 심사국 (Mental Health Review Tribunal)이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도 이 심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신보건 심의는 언제 열립니까?

정신질환 환자로 판정받은 환자를 정신보건시설에 강제수용하기로 결정된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정신보건 심의가 열려야 합니다.

정신보건 심의에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됩니까?

정신보건 심사국에서는 우선 환자가 정신질환 환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정신보건 심사국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를 반드시 퇴원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걸로 판정받으면, 심사국에서 환자에 대한 추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심사국에서 염두에 두는 사항은 환자에게 간병과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구속적인 환경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신보건 심사국에서는 (3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기간 비자발적 환자 (INVOLUNTARY PATIENT)로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되도록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퇴원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에서 퇴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면, 퇴원 후에도 환자가 특정 치료를 계속 받도록 지역사회 치료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정신보건 심사국은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최고 14 일까지 심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 심사국이 비자발적 환자로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되도록 결정을 내린 경우, 심사국은 그 환자가 자신의 재정문제를 관리할 능력이 되는지의 여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가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간주되면 NSW 피신탁인 및 가디언법 2009 (NSW Trustee and Guardian Act 2009)에 따라 환자의 재정문제 관리에 대한 결정도 내려져야 합니다.

정신보건 심의에서 환자는 어떤 권리를 가집니까?

환자는 정신보건 심사국에 자신이 원하는 사항을 직접 말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심의에 참석할 때는 부담없는 평상복을 입고 참석해도 되고, 통역사의 도움을 받고, 심의의 내용에 대해 보호자나 가족, 친구들과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료 기록을 신청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환자로 판정된 것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까?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나 친구, 가족)은 언제든지 의료 감독관이나 인준된 의사에게 퇴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 감독관이나 인준된 의사가 요청을 거부하거나, 평일 3 일 이내에 환자 (혹은 보호자나 친구, 가족)의 요청에 응답이 없으면 정신보건 심사국에 항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항소 권리가 명시된 통지서가 환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비자발적 환자 판정 결정에서 정한 시기가 거의 만료되어 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정에서 정해진 시기가 만료되기 전에 시설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재검토하고 그에 따라 환자의 퇴원이 결정되거나, 퇴원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신보건 심사국에 결정기간 연장 신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더이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거나, 더 적절하고 합당한 간호를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다고 심사국이 판단하면, 심사국에서는 반드시 환자의 퇴원을 승인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나요?

시설내 직원, 사회복지사, 의사, 공식 방문직원, 종교인, 자신의 변호사 혹은 정신보건 옹호 단체 (Mental Health Advocacy Service)에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 옹호 단체의 전화번호는 9745 4277 입니다.

친구나 친척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정신보건시설에 있는 동안 친구나 친척 중 한명을 자신의 보호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인 자격으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 정신보건 심의에서 환자의 시설 수용, 이송 혹은 퇴원이 결정될 때마다 그에 따른 통보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한 특정 정신보건 치료법이나 수술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환자와 환자의 주 보호자는 퇴원 후에 이루어지는 추후 치료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